

검 토 보 고 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3. 제안이유

가. '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이하 당사자들)는 '20년 道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3년 3월 소송이 종결되었음.

나. 패소에 따른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은 '24년 1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고, 같은 해 2월 소방본부는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음.

다. 당사자들은 '24년 3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보완을 이유로 철회하였고, 같은 해 4월 수정 제출하였음.

라. '24년 4월 김꽃임 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에 청원이 상정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마. 충청북도지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들은 비록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이며,

-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 각계는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변함없는 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건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원을 “수용”하는 의견임.

사. 그러나 해당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면제가 핵심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아. 또한 “청원에 대한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채무면제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됨.

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86조에 근거해 채권이 종국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면제대상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카합 1045(유가족), 1046(부상자)

나. 소송비용 세부내역(총 204명, 금176,814,484원)

- ① 유가족 소송비용(202명, 총 금139,230,973원) / '24. 1. 25. 확정
 - 2심 선정당사자 민○○ 부담금액 : 금88,507,851원
 - 3심 선정당사자 김○○와 선정당사자들(201명) 부담금액 : 각자 금251,104원
- ② 부상자 소송비용(2명, 총 금37,583,511원) / '23. 8. 21. 확정
 - 선정당사자 한○○ 부담금액 : 금34,100,546원
 - 선정자 이○○ 부담금액 : 금3,482,965원

다. 관련사건

- 1심 :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070(유가족), 2020가합10100(부상자)
- 2심 : 대전고등법원 2021나51984(유가족), 2021나51892(부상자)
- 3심 : 대법원 2022다297373(유가족), 2022다297366(부상자)

5.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2020년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2023년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면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됨.
- 도의회에서는 제416회 임시회를 통해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였고, 충북도는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원에 관한 조치 결과로써 본 동의안을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적 원칙이지만 본 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접근해야 함.
- 충북도가 소송에서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에 착안하여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충분한 법적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보상적 측면의 소송비용면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6. 검토의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청원의 처리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